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5.(월) 총 7매(본문2, 참고5)	
담당 부서 물류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백현식, 사무관 선기운, 주무관 신성일 • ☎ (044) 201-3995, 4005	
보 도 일 시	2018년 2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지원...접수마감 내달 30일 - 온실가스 감축·미세먼지 저감 기술·장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온실가스 감축,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.
- 올해 지원규모는 18억 6천만 원으로, 중소·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(사업비의 50%이내)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(사업비의 30%이내)으로 차등 지원하고,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.
-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, 민간공모사업,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,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신청도 가능하다.
 -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, 에어스포일러 등 9억 3천만 원이며, 그 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 히터*를 집중 지원(1,855대, 7억 4천만 원)한다.
 - *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 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
 -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,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,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. 신청품목은 무시동 에어컨, 전기식 냉동시스템,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

- **효과검증사업**은 물류·화주기업 또는 생활물류 새싹기업(스타트업)이 친환경 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·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, 온실가스 감축,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·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이며,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.

<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>

구 분	정부지정사업	민간공모사업	효과검증사업
지원규모	9억 3천만 원	7억 3천만 원	2억 원
지원대상	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(5천만 원), 통합단말기(10만 원 이내), 에어스포일러(15만 원 이내), 무시동히터(40만 원 이내)	공기저항·공회전저감, 에너지 대체, 실버택배 등 (무시동에어컨, 콜드체인(Cold Chain)시스템, 택배전동장비 등)	기술, 장비 효과 검증
신청자격	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(230개사)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(21개사)	물류기업, 화주기업	물류기업, 화주기업 (기술, 장비 개발자 등)
지원규모	30~50% 이내	30~50% 이내	검증비 전액 지원 (임차료, 장착비 자부담)

- 사업신청은 **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**(031-369-0337, 0338)에서 접수*하며,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**3월 30일(금) 18:00까지** 제출(직접 또는 우편)하면 된다.

*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 알림마당,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(www.kotsa.or.kr), 녹색물류 누리집(<http://gl.ts2020.kr>, 공지사항) 참조

-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,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,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**5월 중 최종 선정**한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.”라고 말하면서,

- “중소·중견기업들이 친환경 물류활동에 혁신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선기운 사무관(☎ 044-201-39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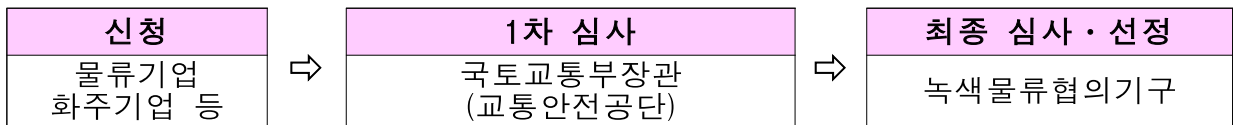
친환경 물류지원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

□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지원목적, 정부정책의 우선순위,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, 민간공모사업,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
- (선정절차) 기업의 신청을 받으면,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차 심사와 녹색물류협의기구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



<지원대상별 지원범위>

구 분	정부지정핵심사업	녹색물류공모사업	
		민간공모사업	효과검증사업
지원내용	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효과가 검증된 장비 지원	민간제안 장비 등 지원	기술, 장비 효과검증
신청자격	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	물류기업, 화주기업 등	기술, 장비 개발·보유자 등
선정기준	①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②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	평가기준에 따라 심사	① 효과검증 필요성 심사 ② 민간제안사업 평가기준 준용
지원내용	시스템 구축비, 단말기 구입비의 30~50% 이내	사업비의 30~50%이내	사업비 전액 지원 (50백만원이내)

* 기업상한액은 중소·중견기업은 최대 50%·150백만원이내,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%·100백만원 이내 지원(효과검증사업은 제외)

- (지원방식) 지원금액의 50%를 선 지급하고, 사업종료 후 이행조건 충족 시 나머지 지급

1. 지원목적

- 기업의 친환경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

2. 신청기간

- 2018년 2월 6일(화) ~ 2018년 3월 30일(금)

3.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

- 정부지정핵심사업 :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(위수탁 등 협력기업,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)
- 녹색물류공모사업 :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
 - 기업·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·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·보고·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

4. 지원대상(사업제안분야)

- 정부지정핵심사업 :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, 통합단말기, 무시동히터,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
- 녹색물류공모사업 :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(자유공모)

- 공동수송·배송과 친환경·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,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, 장비, 차량개조 등
- 녹색물류 기술·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·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

5. 지원규모(18.6억원)

사 업 명	예 산	지원규모 및 상한액
① 정부지정핵심사업	930	
▪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	80	▪ (지원규모) 시스템 구축비용의 30~50%이내 - 중소·중견기업은 50%이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%이내 ▪ (상 한 액) 기업당 5천만원 이내
▪ 통합단말기 보급	75	▪ (지원규모)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% ▪ (상 한 액) 대당 10만원, 기업당 1억원이내
▪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장착	33	▪ (지원규모) 사업비의 30~50% 이내 - 중소·중견기업은 50%이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%이내 ▪ (상 한 액) 대당 15만원 이내
▪ 무시동히터 장착	742	▪ (지원규모) 사업비의 50%이내 ▪ (상 한 액) 대당 40만원 이내
② 녹색물류공모사업	930	
▪ 민간공모사업	730	▪ (지원, 상한액규모) 중소·중견기업은 50%, 대기기업 등은 30% 이내
▪ 효과검증사업	200	▪ (지원규모) 시험비 전액지원(단,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) ▪ (상 한 액) 건당 5천만원 이내

*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

**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는 차량이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

- 차량이 오래된 차량(무시동히터 OEM 주문제작 이전 차량 : '08년식 이전) 우선 지원하되, 폐차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00년 이전 차량은 우선 지원에서 배제

***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·운영을 통해 사업포기·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

**** 기업상한액은 중소·중견기업은 최대 50%·150백만원이내,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%·100백만원 이내 지원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

6. 신청방법

-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(www.kotsa.or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, 녹색물류누리집(http://gl.ts2020.kr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
- 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
 - 주소 : (우 445-871)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
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
 - 전화 : 031-369-0337, 0338
-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 - 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e-mail 접수 불가

7. 제출서류

-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법인등기부등본(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) 1부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(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)
- ⑤ 사업계획서
- ⑥ 사업수행확약서
- ⑦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의서, 자동차등록증, 위수탁계약서,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직영차량보유 입증자료, 차량리스트 반드시 제출
- ⑧ 기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
8.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

- 선정기준 및 절차는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(별첨1)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(별첨2)에 따름
 - '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(단체 포함)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선정결과 발표(예정) : 2018년 3월 30일 이후 공고(변경시 별도 통보)
 - *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
 - *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에 게시

9. 유의사항

-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로 문의(T. 031-369-0337, 0338)